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전문기술인 포함 등 〉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01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전문기술인 포함 등	2
※ 참고자료	14
□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 대상 체육시설 현황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6. 6. 11.
3. 회 부 일: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 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제4조의5 및 제40조).

Ⅲ. 검토의견

□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전문기술인 포함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건축·구조·설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의3 제3항 신설), ②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점검 결과의 문서 작성·보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안 제4조의3제4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③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의 조치사항에 시설물의 사용 제한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4조의5).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구조·설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u>

<신 설>

<신 설>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
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
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
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
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시
설의 범위, 점검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인의 자격 기
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보수·
보강, 사용 제한-----
-----.

③ -----

----보수·보강, 사용 제한-----

-----.

④ -----
-----공개방법, 제2항에 따른 이
행기간-----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 7. (생략) ② (생략)	제40조(과태료) ① ----- ----- ----- 1. 제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현행법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및 시정 명령, 등록취소·영업정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²⁾.

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점검 수행 인력에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 포함 의무 및 ② 안전점검 결과의 문서 작성·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③ 안전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 7. (생략)

③ (생략)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 7. (생략)

② (생략)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의 조치사항에 시설물의 사용 제한을 포함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전문기술인 포함과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령³⁾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은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2.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2.2.1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체육시설 특성 및 점검 목적에 맞추어 해당분야(시설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 공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무원(담당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필요시 체육시설 안전점검 분야와 관련된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회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2.2.2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 안전점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총괄한다.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자는 공무원 또는 안전점검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한다.
- 정밀점검의 실시자는 해당분야(건축, 건설안전, 토목, 소방시설 등)의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점검의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되고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자는 ‘공무원 또는 안전점검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고, ‘정밀점검’의 실시자는 ‘해당 분야(건축, 건설안전, 토목, 소방시설 등)의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4)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호)]

1.4 용어 정의

-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체육시설의 기능적 안전 상태를 판단하고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 “**긴급점검**”이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 “**정밀점검**”이란 체육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외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정해진 등급을 판정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건축·구조·설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 정밀점검 외에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경우에도 전문기술인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비전문가의 형식적 점검을 방지하고 안전점검 실시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4조의3제5항은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 점검의 방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4조의3제1항⁵⁾은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4조의3제3항은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규정이 중복되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제4조의4 및 시행령 제2조의5⁶⁾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 4. (생략)

② (생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위탁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별로, 직장 체육시설 및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의해,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해, 안전관리 취약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⁷⁾.

[체육시설별 안전점검 시행 주체]

점검 주체	해당 시설
시·도지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중 시·도 설치·운영 시설
	직장 체육시설 (군부대 직장체육시설 제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시장·군수·구청장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중 시·군·구 설치·운영 시설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추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중 국가 설치·운영 시설
	안전관리 취약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한 200여개 시설)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⑤·⑥ (생 략)

7)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 대상 체육시설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다음으로, 안전점검 결과의 문서 작성·보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현재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3.6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법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하고, 각각의 상급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점검 결과 총평
 - 점검 분야별(시설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각 시설별 점검결과 조치방향(문제점, 위험 해소방안 등)
- 결과 보고서는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변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결과 보고서에는 분야별 점검내용, 점검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 제40조제1항제1호는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이나 평가체계 도입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사용 제한 조치 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은 체육시설 안전등급이 사용중지인 경우 모든 분야의 안전등급이 불량에 해당할 때에는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부분적 사용제한 또는 시설 전체 사용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3.4.2 안전점검의 등급평가 기준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은 분야별 안전등급과 종합등급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등급은 양호, 주의, 불량으로 구분하며 종합등급은 양호, 주의, 사용중지의 3등급으로 구분한다.
- ※ 종합등급이 사용중지인 경우 모든 분야(시설물분야, 소방시설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의 안전등급이 불량에 해당할 때는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부분적 사용제한 또는 시설 전체 사용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3.5 안전점검 실시결과 이행

-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시행령 제2조의6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이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의 조치사항에 시설물의 사용 제한을 추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실시결과를 이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선제적·적극적인 위험통제가 가능해지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건축·구조·설비 등 관련 분야 전문 기술인의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체육시설 사용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찬성한다는 입장임.

다만, 시행령 위임사항의 중복 및 안전점검 결과 미작성 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 대상 체육시설 현황

(2025년 1월 기준)

구 분	안전점검 대상 체육시설 수(개)
서울특별시	13,165
부산광역시	5,250
대구광역시	4,044
인천광역시	4,597
광주광역시	2,598
대전광역시	2,634
울산광역시	1,794
세종특별자치시	623
경기도	21,301
충청북도	4,540
충청남도	4,214
전라남도	5,980
경상북도	11,396
경상남도	7,102
제주특별자치도	1,527
강원특별자치도	4,758
전북특별자치도	3,332
합계	98,85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